

장애학생지원규정

(제정 2011.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②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 ③ “교육·복지”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에 재적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5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2. 교수·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학생 상담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5.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7.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제6조 (조직) ① 지원센터에 1명의 지원센터장을 두고, 학생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8>

- ② 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3-4-14-2 장애학생지원규정

제7조(신상자료 관리) ①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8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에 관하여 신고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한다.

제9조(우선 수강신청)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단과대학은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수자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수자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킨다.

제11조(학점등록) 장애학생이 졸업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점등록을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13조(봉사활동 인정)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 활동)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7조(경력개발)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교내·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 4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18조(설치) 장애학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